#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현정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848 발의연월일: 2024. 7. 17.

발 의 자: 김현정·한정애·박상혁

정성호 • 민형배 • 민병덕

이광희 • 모경종 • 이개호

이상식 · 정준호 의원

(11인)

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2011년 국제회계기준 도입으로 기업회계기준에서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(statement of financial position)로 변경하였는데, 아직 일제시대부터 사용하던 대차대조표 용어가 법률에 남아있어 이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고자 함(안 제30조제2항).

법률 제 호

##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

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30조제2항 중 "대차대조표"를 "재무상태표"로 한다.

##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\

##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0조(예산과 결산) ① (생 략)	제30조(예산과 결산) ① (현행과
	같음)
② 재단은 사업연도마다 결산	②
보고서, <u>대차대조표</u> , 손익계산	<u>재무상태표</u>
서 및 기본재산계산서를 작성	
하여 해당 연도가 지난 날부터	
2개월 내에 시·도지사에게 제	
출하여야 한다.	<u>.</u>